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Library Privacy Policy

노영희(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론 | 4.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제안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국내외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분석 | |

초 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기술이며 도서관 직원의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적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개인정보관계법 분석, 국내외 도서관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외 개인정보침해 사례조사,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개인정보보호정책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과는 차별화시키고자 하였다.

ABSTRACT

A library privacy policy describes the library's willingness to protect the library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also serves as a code of conduct for library staff. In recent years, cases of privacy invasion have been growing exponentially in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at the library, an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a privacy policy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study, we try to develop and propose the optimal library privacy policy. For this purpose, we derive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cy laws and guidelines, investigating invasion of privacy cases at home and abroad, and studying different library privacy policies from libraries around the world. The library privacy policy that we propose in this study was created to be a guideline for librarians when dealing with privacy issues and is library specific, diverging in many ways from privacy guidelines used in other fields.

키워드: 도서관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정책
library user, privacy, guideline, personal information, library privacy polic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07-242,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0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2)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를 보면, 2003년에는 17,777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35,167건으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54,832건으로 1년 만에 거의 1.8배, 2011년에는 122,215건으로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유형으로 가장 높은 것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10,958건)이며,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67,094건),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신용정보침해 등)(38,172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6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침해는 도서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사례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노영희 2012a).

이와 같이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예외 없이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의지의 기술이자 도서관 직원 행동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엑세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기반 레코드를 유지하고, 도서관 자원의 사용을 추적하거나 대출반납을 위해 전자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기술하는 문장이나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Falk 2004).

미국도서관협회(ALA 2005)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많은 도서관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Falk 2004). Falk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도서관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성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노마카운티(Sonoma County, California) 도서관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임무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수집하지 않으며, 법원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용자의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고객정보는 기밀로 지켜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이용자 프라이버시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침해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크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고,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심각성과 다양성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이 생겨나고 그 내용이 변화·발전되어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쯤에 노스캐롤라이나 카타와바카운티 검찰관이 카타와바카운티도서관(Catawba County Library) 관장에게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도서관 대출기록을 요구했을 때, 관장은 검찰을 도와야 할 의무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의무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 영장을 요구했었다(Silas 1986). 비슷한 사건들이 많아지자 도서관이용자의 레코드를 보호하는 도서관프라이버시법이 노스캐롤라이나법 내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에는 뉴욕주법에 도서관레코드의 기밀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Silas는 국가보안은 매우 중요하지만, 도서관레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의 습관이나 종교 등에 관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에서도 논문이나 사례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인권침해 논란과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가 간간히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1994년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기관에 적용되어 왔으나, 2011년 9월 30일부터는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확대·적용되었다. 이에 도서관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하나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도서관의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들이 성문화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책의 내용이 해외 도서관과 비교

하여 어떤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외 도서관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도서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도서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쳤다. 첫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법들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둘째, 도서관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서관법,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직 윤리,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ALA의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하였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방법 및 절차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제안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사서 및 도서관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장한 연구, 이러한 방침이 디지털 도서관의 도래로 더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Falk(2004)는 많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언급하는 성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의지의 기술은 도서관 직원 행동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Enright(2001)는 기관의 프라이버시정책에 대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했으며, 특히 그는 프라이버시정책과 법적·규정적 그리고 다른 제약조건과의 문맥관계를 수립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farek(2002)은 시스템전문 사서이자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LSU(Louisiana State University)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대학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프라이버시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의 명확한 측면과 불명확한 측면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Struges(2002)도 프라이버시정책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으며, 특히 그 프라이버시정책이 윤리적, 법적, 실제적인지, 그 정책이 공공의 관심사에 대응한 정책인지, 그리고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정책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참조해야 할 문서로 Swan(1998)의 “Public Records and Library Privacy”, Coombs(2005)의 “Protecting USER PRIVACY in the Age of DIGITAL LIBRARIES”와 “Walking a Tightrop: Academic Libraries and Privacy” 등이 있다.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사서 및 도서관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장한 연구로, Tripathi와 Tripathi(2010)는 윤리는 모든 직업 영역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서관인의 윤리 관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윤리나 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김혜선(1994), 손연옥(1996), 김혜경과 남태우(2004), 강순희(2003) 등도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이력보호, 이용자비밀유지 등을 사서직의 윤리 측면에서 논하고 있다. 김혜선(1994)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도가 일관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방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순희(2003)는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 연구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혹은 대출기록 등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가진 도서관이 많지 않았음을 밝히고, 외부의 검열에 대해서 이

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서관 프라이버시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도서관 이용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turges, Teng, Iliffe(2001)는 디지털자원과 시스템이 도서관에서 중요해짐과 동시에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프라이버시침해 사례의 영향으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Loughborough 대학교의 Legal and Policy Research Group은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하고, 정보전문가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Jones(2010)는 기술적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도서관에게 장벽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아주 다른 법적, 제도적 환경, 둘째, 국가적 기술개발의 상이한 수준, 셋째, 프라이버시의 의미에 대한 다른 문화적 해석, 넷째, 투명성과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가치의 충돌 등이다. 그는 또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권고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연구 중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개인정보보호방침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 김기성(2006)은 국내의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는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관리, 도서관 자원 및 시설 사용기록, 웹 서비스, 컴퓨터의 사용, 제3자보안, 역감시 및 실천대책, 관리제도 등의 구성요소와 각각의 예시

조향을 제시하였다. 이견명(2005)은 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실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보수 주관,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전산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업무를 통합하거나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스템에 보안패치 및 서비스팩의 설치, 불필요한 계정의 즉시 삭제로 잠재적인 위협요소 제거 등의 공공도서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측면 보안을 주장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작성, 물리적 유출방지를 위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도서관 규정에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삽입, 무분별한 수집을 막기 위한 윤리지침 수립, 지침의 홈페이지 게재,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등이 제언되었다.

박상근(2009)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는 국내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담당자, 처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시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안하였다.

그 외 이미화(2006)는 프라이버시 및 도서관 레코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이용자들이 도서관레코드의 기밀이 지켜진다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기문(2003)은 미국

의 애국법(PATRIOT ACT)과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서 애국법 제215조가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미국 사서들의 의식변화를 조사하였다.

도서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가 있으며, Tripathi와 Tripathi(2010)는 도서관협회의 역할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도서관·정보센터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프라이버시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방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제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2.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항에서도 동일하게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의 주체)에 관한 정보 일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OECD 2001),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data)라 함은 자연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직접·간접으로 특히 신원증명번호 또는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또는 사회적 동일성에 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을 참조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박환일 2001). 또한 ALA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이버시는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실천하기에 필수적이며, 도서관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에 의해 어떤 사람의 관심사의 주제에 대하여 검열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개방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로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심주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조사되거나 감시되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리(ALA 2012)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할 때에는 공·사법의 공통의 원리로

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타인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적인 기본권)에 관한 간접적용설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노영희(2012a)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2.3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념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30년대의 미국의 검열사건은 지금까지 수없이 재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1999년 IFLA가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을 천명하게 하였다.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도서에 대한 반검열적, 그리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이고, 국내의 경우 도서관계에서 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후 검열이나 지적자유에 관련한 논문이 많지 않다. 이는 학계 및 도서관계의 노력으로 도서관계에서 검열제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검열제도 대신에 시스템에 의한 이용자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서관이용자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또

는 개인에 의해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정현대 2000). 첫째, 모든 개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는 모든 정보와 사상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매체, 정보의 생산자 및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결국 지적자유는 정보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그 순환은 깨어지게 된다.

프라이버시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생활권이 있으며, 사생활권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이다(한수웅 2002). 또한 이 사생활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권건보 2005). 즉 자기정보결정권이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2.4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할 때 참조해야 할 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공공부문의 법과 민간부문의 법, 그리고 도서관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민간부문의 법은 매우 다양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법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93. 12)은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도청, 대화의 녹음·청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95.1)은 신용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97.12.31)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그 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1. 1. 16) 등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을 가진 다른 법률로서 국가공무원법, 형법, 주민등록법, 의료법,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형벌 또는 징계부과에 관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는 법은 도서관법이다. 『도서관법』 제8조와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 사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 언급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도서관은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유통관리에 대한 회원국의 일치된 의견을 정리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OECD 2001).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도서관법시행령] [본조신설 2009.9.21]
 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보주체에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의 명확화/특정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할 당시에 미리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 목적의 달성 또는 수집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명확화/특정 원칙에 따라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개, 이용, 기타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5. 안전조치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훼손, 파괴,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안전보호 조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과 관련된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 정보 관리자를 식별하고, 그 주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개인참여의 원칙
개인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과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는 경우에 개인은 그 이유를 구하고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파기, 정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상기 모든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은 법적 제재에 의한 책임 외에 자기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도 포함된다.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은 해외정보감시법과 애국법이다.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은 미국 의회가 정당한 감독 없이도 미국에 대한 외국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행정부와 산하 정보기관에서 전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으로, 도서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제215조이며, FBI가 국제 테러리즘 또는 비밀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기록, 보고서, 문서 등을 포함한 어떠한 유형의 매체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기록은 조사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조사되거나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다.

2.5 도서관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핵심문헌

본 절에서는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문헌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경우 도서관인 윤리선언과 ALA의 도서관의 권리선언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법에 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롭게 개발된 RFID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5.1 도서관인 윤리선언

1996년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제47차 정기총회

에서 가칭 '사서직윤리현장 제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10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공청회 및 2차례의 지상공청을 거쳐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대한 3차의 제안문을 작성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그 문안을 확정하여 1997년 10월 30일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선포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1997a/1997b).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민주주의의 수호, 자아성장,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념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동력, 봉사정신, 최종책임자의 권리, 공익기관 종사자로서의 품격 등 4가지 보조적 요소가 주문(主文)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7개의 주문(主文)에는 각각 4개항, 총 28개항의 행위지표를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5.2 ALA의 도서관의 권리선언

1939년 ALA는 당시 행해지던 검열행위에 대처하고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정치 이념적 의도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도서관의 권리선언(The Library Bill of Rights)』을 채택하였다. 즉 도서관의 이상, 시민의 정보권,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44년에는 도서관 권리선언 제1조에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도서가 일부 인사들의 항의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항목을 추가하였고, 1948년에는 도서관 권리선언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권리선언이 공

공도서관에만 적용되었던 것을 모든 종류의 도서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검열에 도전하는 도서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투쟁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 출판 등의 관계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1967년에는 도서관 권리선언을 개정하여 기준이 명백하지 못하고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며 악용의 사례가 있음을 들어 해당 구절(ex. 건전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권위가 있는 것)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명령과 사회적 견해를 추가하고, 도서관 장서에 시청각자료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독서자료(reading matter)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자료(library materials)로 수정하여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1980년의 주요 개정은 도서관의 역할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하던 것을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개정한 것이다.

2.5.3 RFI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RFID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운송·유통·내부재고관리 등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이 RFID 태그가 부착된 사물을 착용·휴대할 경우, RFID 태그 내 고유 정보가 관독되어 개인에 대한 성향 파악 및 위치추적 등에 오·남용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은 RFID 태그, 리더기를 비롯한 전체 시스템을 취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취급사업자는 제시된 기준 하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용자

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RFI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RFID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증가로 프라이버시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규제 이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적 지침이다.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강제력이 부여된 강제규범은 아니지만 RFID시스템 이용기관에 개인정보 처리 시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3. 국내외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 비교분석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도서관 프라이버시정책을 대표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각 관중의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KLA)에서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프라이버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자료]부분에서는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라고 하고, 그 하부조항인 라항에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다. 이 방침은 2005년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이라는 명칭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많은 도서관이 이 지침을 기반으로 각 도서관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ALA의 가이드라인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ALA의 가이드라인은 개개 도서관이 도서관이용자 프라이버시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일 뿐이다. 즉 ALA가 샘플로 제시하는 다양한 도서관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1 지침의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여러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ALA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ALA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개발정책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도서관이 참조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중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하나씩 선택하였는데, ALA에서 대표적인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

의 개인정보처리정책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석, 둘째, ALA의 도서관 프라이버시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셋째, 공공도서관의 사례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넷째, 대학도서관 사례로 시라큐스대학교의 대학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시라큐스는 ALA에서 샘플로 제시한 사례 중 하나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사례이다.

3.1.1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마련은 2004년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인좌석 발급기를 도입한 전국의 21개 공공도서관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사한 결과 사생활 비밀침해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해당 도서관들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까지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의 규정 없이 관리·활용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이에 따른 추가 지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며, 공공도서관 사서 연수·교육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에 관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5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도서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6개월~3년의 기간 내에서 회원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되도록 하였고, 그 기간 이전이라도 회원이 탈퇴를 하면 지워지도록 하였다.

(2) 회원 개인별 도서대출기록 서비스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도서대출기록이 개인의 사상, 취향, 가치관을 알리는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3) 카드형태의 회원증 표면상에는 이름, 사진, 회원번호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증 분실 시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4) CCTV설치와 관련하여 열람실 내에는 회전 및 줌방식의 고성능 기기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링 기능설정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칭을 바꾸어 매우 상세하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2005년의 방침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공지

하고 있다.

3.1.2 미국도서관협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도서관 프라이버시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03년에 산하위원인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IFC)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개개 도서관의 도서관 프라이버시정책을 개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샘플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 도서관에서 자관의 도서관 프라이버시 지침을 개발할 때 참조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에서는 다섯 가지의 '공정정보 실행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을 개개 도서관의 프라이버시지침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ALA의 5가지 표준프라이버시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기성(2006)의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 (1) 공지와 개방: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에 대한 도서관 정책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개발하는 것
- (2) 선택과 동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과 동의
- (3) 이용자에 의한 접근: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에 의한 접근
- (4)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 개인정보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
- (5) 집행과 구제(보상): 도서관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도서

관에 의해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그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ALA는 도서관의 기밀정책에서 도서관이용자의 정보는 법원명령이나 소환장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3.1.3 시애틀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은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라는 명칭으로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있다. 먼저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정보를 요구한 사람과 자료를 대출한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웹사이트 및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인이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수집되는 내용, 쿠키,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 이용자가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과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기대하는 것, 제3자에 대한 것, 외부 사이트, 그리고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3.1.4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정책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Syracuse University Library)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ALA의 윤리 선언에 기초한다고 선언하고, 개인정보의 의미를 '이름, 숫자, 기호, 표시 또는 다른 식별기호

때문에 자연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어떤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책의 용어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대학정보, 인증서비스, 도서관웹사이트, 비즈니스 거래(Business Transaction) 등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이 정책은 'New York State Law'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뉴욕주법에서 도서관과 관련 있는 부분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① 도서관웹사이트 브라우징, ② 참고서비스, ③ 전통목록, ④ 대출, ⑤ 상호대차, ⑥ 온라인 자원, ⑦ 도서관연구이니셔티브, ⑧ 비즈니스거래, 그리고 ⑨ 보안 등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3.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07년 12월에 수립되어 2012년 6월에 개정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세부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권익침해 구제방법 등 10가지 항목을 매우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2 국내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도서관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관종별로 약 20여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매 28번째 기관을 선정하여 총 21개 기관, 공공도서관은 매 40번째 기관을 선정하여 21개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종별로 조사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분석하였다. 보통 3계층까지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표로 작성하여 그 빈도를 체크하였다.

3.2.1 사용되는 용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순으로 나타났

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용어는 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21개 기관 중 17개 도서관, 대학도서관은 21개 기관 중 7개 도서관, 학교도서관은 21개 기관 중 11개 도서관, 전문도서관은 20개 기관 중 5개 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3.2.2 정책의 내용

정책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다른 일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크게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개인정보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침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무인좌석발급시스템, 공용프린트 및 복사시스템회원정보, 대출도서의 회수, 대출도서목록, 무인좌석대출자번호, 도서관사이트관심사항, 대출정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기증자료등록관련 내용, 도서관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 위배관

〈표 1〉 개인정보보호방침과 유사용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총계
개인정보처리방침	8	3	8	4	23
개인정보보호방침	3	2		1	6
개인정보보호정책	3	2	3		8
개인정보취급방침	3				3
총	17	7	11	5	40

련 내용, 도서관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의 항목 등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모든 관중보다 가장 많은 도서관관련 항목을 다루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도서관 시설 이용, 대출관련정보, 도서관이용대상자 등의 항목 등이 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DLS ID 및 패스워드 관련 항목, 도서관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의 항목이 있다. 전

문도서관의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마디로 해외의 도서관과 달리 국내의 경우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은 많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되는 지침을 각각의 도서관의 업무상황에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법으로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충분하다고 보며, 도서관을 위한 지침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과 사용통계 분석결과

1계층	2계층	3계층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총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17	7	11	5	40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의 목적		14	2	6		22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의 법률적 근거		14	4	10	4	3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4	0			4
	개인정보의 의미		1			1	2
	법률과의 관계 고지		4				4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1				1
	유용한 서비스 개발		4	1	1		6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나 메뉴 등에 적절한 광고와 내용 제공		1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9				9
	인터넷 서비스 이용			1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식별		4		1	1	6
	공지사항 전달		3				3
	민원 접수 및 처리관리		4	1	1	1	7
	이벤트, 서비스 등의 정보 안내		3	1			4
	유료정보의 요금결제		1				1
	물품배송시의 배송지 확보		1				1
	인구통계학적 분석		1				1
	통계분석		10	2	2		14
	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8	2			10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1			
	도서관 시설 이용			1			
	홈페이지 회원관리		5	1	4	1	11
	보안침해대응			1			

1계층	2계층	3계층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총계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8	1	2		11
		학사관리 및 학교 행정서비스 제공		2			
		본교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1			
		무인좌석 발급시스템	1				1
		공용프린트 및 복사시스템 회원정보	1				1
		가입의사확인	1		1		2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1				1
		대출도서의 회수	1				1
		부서업무수행			1		
		뉴스레터발송				1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이용				1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1		1		12
	자동 수집항목		9	1	1		11
		이용자의 인터넷도메인명과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9	1	3	1	14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8	1	2	1	12
		이용자가 사용한 단말기의 IP Address	2	1		2	5
		방문(기록)일시 등	9	2	2	2	15
		홈페이지내방문한페이지주소		1	1		
		쿠키		2	1	2	
		MAC주소		1		1	
		서비스 이용기록		1	1	2	
		불량 이용기록		1	1	1	
	필수 수집항목		3				3
		이용자 본인 식별 정보 (성명, 학과, 학번, 주민등록번호, ID, Password 등)	12	4	7	3	26
		I-PIN 번호				1	
		성별				1	
		학교, 학년, 반, 번호			7		
		DLS ID, Password			4		
		E-mail	10	1	1	3	15
		전화번호	11	3	1	3	18
		주소	9	3	1	1	14
		대출도서 목록	1				1
		대출 관련 정보		1			
		무인좌석 대출자 번호	1				1
		학교, 직장명	3	1			4
		소속명, 소속구분				1	
		세대주 명	3				3
		세대주 휴대전화	2				2
		법정대리인 정보	1				1
		법정대리인 인증정보	1				1
		뉴스레터 수신여부				1	
	선택 수집항목		1				1
		관심사항	1				1
		직업	1			1	2
		도서관사이트 관심사항	1				1

1계층	2계층	3계층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총계
	그의 수집항목		0				0
		결제 관련 정보(은행계좌, 신용카드정보,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등)	2				2
	수집 방법		2				2
		온라인	2	1	3		6
		오프라인	2	1			3
		회원가입 프로그램 (KPAC)	1				1
		시스템연계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9	2	5	2	18
	정보파기 안내 (탈퇴 / ID 삭제)		10	4	7	4	25
		파기절차	8	3	7	4	22
		파기기한 및 방법	8	3	7	3	21
	특정 보유 안내		5				5
		대출정보	2				2
		도서관 대출관리 (준영구)		1			
		도서관 대출관리 (준영구, 70년)		1			
		회원정보	3				3
		도서관 이용 대상자 (준영구, 50년)		1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2년)	1				1
		계약, 청약철회 (5년)	1				1
		대금결제, 제화공급 (5년)	1				1
		민원 처리 (3년)				1	
		민원 처리 (5년)	1				1
		민원 처리 (10년)	1				1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5년)	1				1
		기증자료 등록관련 (3년)	1				1
		운영위원 (2년)	1				1
		학부모 연수 이수자 (준영구)	1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4	4	7	4	29
	비공개 원칙		13	5	7	3	28
	비공개 예외사항		12	4	7	3	26
		이용자 동의 시	8	4	5	3	20
		특별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4	2	5	2	13
		위급한 상황	5	3	5	2	1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특정개인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	11	4	6	2	23
		도서관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해	1				1
		도서관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1		3		4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ex.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가 있는 경우	7	4	5	3	19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보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3	6	2	17

1계층	2계층	3계층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총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2	6	3	20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3	6	2	1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2	3	1	9
		관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9	1			10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게 힘들 때	2	1			3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개인정보 제공기관			1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1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5	3	6	1	15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1		1	4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1		1	4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1		1	4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1			3
	이용자 사전 동의				2	1	
	제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2	1		1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2	1			3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2	1		1	4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및 배상 보안각서 작성		2	1		1	4
	수탁자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			1	3	1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행사 방법			14	4	5	4	27
	개인정보 열람 요구		14	4	5	4	27
	열람 요구 법률 근거		12	3	4	2	21
	열람 제한 법률 근거		10	3	4	2	19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12	4	5	4	25
	정정, 삭제 요구 법률 근거		7	3	4	2	16
	정정, 삭제 거부 법률 근거		4	2	4	1	11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		8	3	5	3	19
	처리정지 요구 법률 근거		5	2	4	1	12
	처리정지 거부 법률 근거		4	2	5	1	1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8	5	7	3	23
	개인정보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5	5	7	3	20
	관리직원의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2	7	2	14
	정기적인 자체감사 실시			1	1		

1계층	2계층	3계층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총계
	개인정보의 암호화		6	4	7	2	19
	홈페이지 보안조치		10	1	4	1	16
	해킹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8	2	8	2	20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6	5	6	3	20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1	4	1	
	접속기록의 보관		4	2	2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2		6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6	4	5	3	18
	개인정보 보호(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보안 유지 책임)의 책임소재 고지		2	2			4
		온라인 서식 자료의 의사 표시 시 유의 사항	10	2	4	1	17
	링크, 배너를 통한 타 웹사이트 방문시 해당 사이트 정책 안내		8	1	4	1	14
	홈페이지 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 취득 금지 및 처벌 안내		9		4	1	14
	공공 i-pin 사용		2				2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1	3	4	2	10
미성년자 및 아동의 보호정책			2	1	3		6
	법정대리인의 동의		1				1
	법정대리인의 권한		4		4		8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5	5	8	4	32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13	4	6	4	2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안내			8	2	6	1	17
영상정보(CCTV) 개인정보 처리방침			4	2	2		8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5	3	2		10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3	2		8
		이용자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2	2		6
		주차 계도					0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	2	2		8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1	2		7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2	2		8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3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2		4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1	2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3	1	2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2	2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3				3
	CCTV 안내판 설치		1				1

* 회색부분: 도서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임.

* 오른쪽의 숫자는 해당 항목이 출현한 빈도임.

3.3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위에서 분석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내용은 4장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되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지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도서관은 'privacy policy'라고 하여 프라이버시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어떤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목적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함)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수립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ALA의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셋째, 이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다른 법과 달리 사서의 윤리정신에 입각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인 윤리선언이나 도서관법과 관련

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해외 사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침이나 정책은 그 지침이나 정책에서 사용하게 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용어라도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용어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 대학정보, 인증서비스, 도서관 웹사이트, 비즈니스 거래 등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도서관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의 처리내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중에 따라 또는 개개 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술되어야 할 내용의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정책 또는 지침의 수립날짜를 포함하여 변경날짜, 최종 변경날짜 등을 기술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경우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동안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립날짜, 개정날짜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2007년에 처음 수립되고 중간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2년 6월에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일곱째,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제시되는

항목은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지침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 갱신주기도 다른 법에 비해 비교적 자주 빈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갱신주기와 비슷한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지침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의 경우 참고서비스, 대출서비스, 아웃소싱시의 개인정보관리 등으로 도서관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제안

본 장에서는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 지침은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관종의 지침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침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크게 총칙과 일반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칙에는 개발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된 국내법으로 구분하고, 일반원칙에는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포

함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구조는 선행연구, 국내외의 조사된 지침, 각종 법률의 프레임에 참조한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4.1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발목적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개발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지침은 그 지침의 개발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침의 개발목적은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리가 헌법의 최고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할 때에는 공·사법의 공통의 원리로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타인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기본권)에 관한 간접적용성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변재욱 1983; 이재명 1984).

둘째, 이 정책은 도서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도서관인의 윤리의식 및 사명감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자료]부분에서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라고 하고, 그 하부조항인 리항에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ALA의 도서관

의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은 도서관의 이상, 시민의 정보권,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여 해외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이러한 선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정책의 개발목적이 무엇이며 적용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되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시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이 정책은 헌법의 최고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이 정책은 도서관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셋째, 이 정책은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넷째, 이 정책에 따라서 도서관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4.2 용어정의

정책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용어에 대한 정

의는 주로 해당 정책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법률, 가이드, 지침 등에서는 해당 규정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국어사전, 백과사전, 연구논문 등에서 정의된 것 등을 참조하였다.

-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파일:**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매체에 기록된 것이다.
- **개인정보노출:**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서 공공 기관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4.3 개인정보의 범위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주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2003)는 개인정보의 취급·공개에 따라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했다고 느끼는 정보가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한 처리방법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지정된 개인정보 적용범위를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

침에 포함해야 한다.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업무 수행에 있어 취급하게 될 개인정보의 식별정도와 민감도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식별정도나 민감정도를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인식별정도에 따라 <표 4>와 같이 직접식별정보와 간접식별정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민감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질 수 있으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인정보의 민감정도에 따라 보안기준 또는 권한설정을 달리하여 정보공개 시 공개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표 3> 개인정보의 유형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 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료품 등 물품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법적정보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로그파일,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p.18)

〈표 4〉 개인식별정도

직접식별정보	이 정보만으로 당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메일계정, 이용자 계정, 무선통신의 전자번호, 운전면허 번호, 지문, 홍채 등
간접식별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직접 식별정보 등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성별, 나이, 취미, 신장, 병력, 패스워드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p.20)

〈표 5〉 민감정도(개인 정보등급)

1급	정치적/철학적 신조, 건강/의료, 성적기호, 인종, 혈통, 전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등
2급	교육, 고용(인사정보 등), 금융, 신용,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명, 지문, 혈액형, DNA, 출입국 등
3급	개인이 동의하여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보, 법령에 의한 수집정보
4급	기관 견해, 타인 견해, 정부기관 응답, 공개가능한 통신문 등
5급	연구목적, 통계목적, 학술자료 등의 비개인정보로 활용되는 정보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p.20)

4.4 관련법 및 정책

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인 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이 법과 상치되는 규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서는 기타 다른 국내 법과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들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으며, 이 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명시해야 한다.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도서관법 제8조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도서관인 윤리선언 내에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제6조 라항에서는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장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에 RFID 시스템 도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입구나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관련법 및 정책 부분에는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위법 및 관련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LA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의 이용자프라이버시 및 기밀에 대한

정책지침을 제시할 때 개인정보의 정의 및 관련 법 등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4.5 일반적인 지침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지침에는 도서관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3장의 현황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 도서관들의 개인정보처리지침이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여타의 공공기관의 보호지침과 전혀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과도 차별화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외의 시라큐스도서관의 도서관 프라이버시정책을 보면, 도서관웹사이트 브라우저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그에 대한 보호 방침, 참고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정책 등이 있으며, 그 외 도서관목록, 대출, 상호대차, 온라인정보자원, 도서관연구관련 내용, 업체와의 계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지침에는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서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침해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법률내용과 상치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외 현황조사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중앙정부가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셋째, 도서관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에 대한 것으로 대출, 참고서비스 등이다. 넷째, 도서관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도서관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4.5.1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

국내외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규칙을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방법
-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5) 개인정보처리 위탁
-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7) 개인정보의 파기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5.2 정부기관의 법집행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도서관과 사서는 이용자의 지적자유를 보장해 줄 의무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협조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ALA 지침에는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내용 중에 국가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한 특정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를 검찰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에는 정부기관의 법집행, 그리고 국가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사서와 도서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침에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사서와 도서관은 법집행기관이 발행한 영장이 있는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제3자에 대한 이전을 하지 않는다.’

4.5.3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1) 대출기록

이용자의 도서관대출기록은 이용자의 지적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출기록은 특정 이용자의 행적, 습관, 취미, 사상, 가치관을 파악하는 사회적 감시시스템의 하나로 간주(Johnston 2000)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기록은 대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출서비스

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첫째, 도서관의 대출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로지 통계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며, 통계적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한다.

둘째, 대출기록은 반납과 동시에 삭제하며,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요금이 완납되자마자 삭제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연체를 알리는 이메일과 SMS는 대출기록의 기밀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개인이용자의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넷째, 도서관서비스 이용요금 및 연체료를 받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의 번호, 사용내역, 관련 정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한다.

다섯째,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으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2) 온라인탐색서비스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목록과 도서관을 통해 접근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이용 기록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온라인탐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이용기록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추가적인 이용기록을 남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이용기록은 즉시 삭제한다. 이는 연구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도서관의 편의성 요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Adams

et al. 2005).

둘째, 온라인탐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내 또는 외부업체에 제공되는 도서관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탐색서비스를 위해 쿠키가 설치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쿠키의 기능에 대해 명확히 알리며,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한다.

(3)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서비스는 자관 이용자의 연구주제나 관심주제, 그리고 개인정보가 다른 도서관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대출기록과 마찬가지로 상호대차기록은 대출된 책이 반납됨과 동시에 삭제한다.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료가 완납되는 즉시 그 기록을 삭제한다.

둘째, 원문서비스 이용기록은 서비스가 완료되면 즉시 삭제한다.

셋째,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동의를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기록되며,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4) 참고서비스

도서관에서는 대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블로그, 게시판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게 되며,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오프라인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 참고서비스 내용을 최소한으로 기록하며, 기록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둘째,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경우 질문의 공개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서비스 기록은 개인 이용자가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의 신분을 알 필요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5) 소셜서비스

블로그, 위키, 온라인 커뮤니티, Facebook, MySpace와 같은 소셜커뮤니티는 도서관서비스와 콘텐츠를 향상시키고 도서관마케팅에 기여하였지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였다. 익명의 연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명이 요구될 경우 소셜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안의 보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소셜서비스는 이용자정보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블로그, 위키, 온라인 커뮤니티, Facebook, MySpace와 같은 소셜커뮤니티는 개인정보보안이 어려우므로 도서관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정보와 개인이 남긴 메시지는 삭제한다.

(6) 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 관리

이용자가 도서관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사용기록 노출과 관리자의 이용자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근로들이 실시간으로 이용자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는 데에서 제기된 프라이버시 침해 논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서관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으나(국가인권위원회 2005), 아직도 많은 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서관이용자가 컴퓨터사용을 마친 후 사용기록과 사용로그를 즉시 삭제한다. 이는 어떤 이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며, 이전 사용자가 설치한 쿠키가 다음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쿠키도 함께 삭제하기 위함이다.

둘째, 도서관은 이용자의 연구 및 정보이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컴퓨터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며, 관리자도 직접 이용자의 컴퓨터 사용화면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셋째, 이용자의 진정한 지적자유를 보장하고 연구, 학습, 탐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통제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불법사이트통제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넷째, 이용자의 화면이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대한 기술적, 공간적 배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도서관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데이터 중 이용자의 대출기록, 참고서비스 기록 등의 개인정보는 다음 백업이 일어날 때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계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만 남

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7) RFID와 프라이버시

RFID의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편의성 및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Butters 2007). 그러나 RFID 칩에 내장된 자료 및 이용자에 대한 상세정보 때문에 주파수에 의한 노출과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Bender 2006).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도서관은 RFID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RFID 대출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도서관 RFID 태그에 입력되는 정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이용자정보와 자료정보를 연결하는 정보는 RFID 태그를 통해서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8) 도서관자동화기기

도서관에는 좌석발급기, 자동대출반납기, 일일이용증발급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기기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를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서관이용자 아이디와 같은 것을 입력하도록 한다.

(9) CCTV 설치 및 운영

국내의 CCTV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별도의 방침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및 삭제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CCTV 안내판 설치 등으로 매우 상세하다. 물론 도서관도 이러한 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CCTV는 단순히 시설안전, 화재예방, 이용자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보는 자료나 이용자가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이용자의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적자유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Klinefelter 2007). 따라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는 CCTV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담당부서, 부속장소, 촬영시간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둘째, 촬영한 자료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5.4 도서관 외주업체 서비스와 이용자 정보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 및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의 일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서관자동화업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도서관 홈페이지 개발 업체 및 기타 시스템 구축업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Dettlaff 2007; Brown-Syed 2003; Shuler 2004; 노영희 2012a/2012b).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도서관서버업체, 도서관자동화업체, 홈페이지 구축업체, 모바일서비스 구축업체, 디지털자원구축업체 등 다양한 외주업체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보유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및 배상)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침의 내용은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슈가 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발됨으로써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 사서는 물론이고 이용자는 도서관의 프라이버시정책에 대해 상호공감대를 형성하여 오해나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기술이며 도서관 직원의 행동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서관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서 개인정보침해사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적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헌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제안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사서 및 도서관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장한 연구, 이러한 방침이 디지털도서관의 도래로 더 필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념 및 문헌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지적자유,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ALA의 도서관의 권리선언, ALA 가이드라인, RFI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발할 때 매우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문헌들이다.

셋째,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 공공부문의 법

과 민간부문의 법, 그리고 도서관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도서관법』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여러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는 ALA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ALA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개발정책은 없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도서관이 참조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 외 관중별로 한 기관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즉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크게 총칙과 일반원칙으로 구분할 것과, 총칙에는 개발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된 국내법을 포함하고, 일반원칙에는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IFLA/FAIFE(2006)에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첫째, 사서는 도서관내의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그들의 정보탐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사서는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용자 인터넷 기록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법이 요구하는 기간 이상으로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서도 안 되며, 최적의 완전한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지침을 개발하고 준수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진정한 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ALA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관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관종

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ALA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안을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각 관종별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강순희. 2003.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시민과 도서관』, 4(4): 20-59.

[2]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 [online]. <http://www.nl.go.kr/nl/c6/page1_1.jsp>.

[3] 권건보. 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서울: 경인문화사.

[4] 김기문. 2003.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과 도서관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시민과 도서관』, 4(4): 60-71.

[5] 김기성. 2006.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6] 김혜경, 남태우. 2004.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21(4): 329-352.

[7]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8] 노영희. 2012a.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187-214.

[9] 노영희. 2012b. 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서비스와 프라이버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53-384.

[10] 박상근. 2009.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1] 박현일. 200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상호주의 이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보고 2001-11.

[12] 변재욱. 1975. 프라이버시의 권리. 『영남대학교 논문집』, 8: 17-36.

[13] 변재욱. 1983. 한국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사회과학연구』, 3(2): 5-28.

[14] 손연옥. 1996. 도서관 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4: 485-517.

[15] 『연합뉴스』, 2005. 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7월 1일. [online]. [cited 2005.7.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040676>>.
- [16] 이견명. 2005. 『공공도서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7] 이미화. 2006. 프라이버시 및 도서관레코드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사대도협회지』, 7: 225-240.
- [18] 이재명. 198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정논총』, 38: 112-132.
- [19]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 [20]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 윤리선언. [online].
<http://www.kla.kr/jsp/information/library_info.jsp>.
- [21]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 『도서관문화』, 38(6): 37-39.
- [22] 한국도서관협회. 2006. "도서관인윤리선언."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712-713.
- [2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진수. [online].
<<http://isis.kisa.or.kr/sub07/?pageId=070500>>.
- [24] 한수웅. 2002. 헌법상의 인격권 :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논총』, 13: 623-678.
- [25] 행정안전부. 200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이해와 해설』. 서울: 행정안전부.
- [26]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서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7] ALA. 2005. *Privacy Tool Kit: Guidelines for Developing a Library Privacy Policy*. [online]. [cited 2012.9.15].
<<http://www.ala.org/offices/oif/iftoolkits/toolkitsprivacy/guidelinesfordevelopingalibraryprivacypolicy/guidelinesprivacypolicy>>.
- [28] ALA. 2012. *Privacy Resources for Librarians, Library Users, and Families*. [online]. [cited 2012.9.22]. <<http://www.ala.org/offices/oif/ifissues/issuesrelatedlinks/privacyresources>>.
- [29] Coombs, Karen A. 2004. "Walking a tightrope: Academic libraries and privac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0(6): 493-498.
- [30] Coombs, Karen A. 2005. "Protecting user privacy in the age of digital libraries." *Computers in Libraries*, 25(6): 16-20.
- [31] Cowan, P. 1976. "Bearing witness: Some thoughts on Zoia Horn." *Social Responsibilities and Libraries: A Library Journal/School Library Journal Selection*. Edited by Patricia Schuman. New York: R. R. Bowker, 7-11.
- [32] Enright, K. P. 2001. "Privacy Audit Checklist." [online].

- 〈<http://cyber.law.harvard.edu/ecommerce/privacyaudit.html>〉.
- [33] Falk, Howard. 2004. "Privacy in libraries." *The Electronic Library*, 22(3): 281-284.
- [34] Fifarek, Aimee. 2002.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academic library." *Online Information Review*, 26(6): 366-374.
- [35] IFLA/FAIFE. 2006. *IFLA/UNESCO Internet Manifesto Guidelines (The Hague, Netherlands: IFLA, Sept. 2006)*. [online].
〈www.ifla.org/files/faife/publications/policy-documents/internet-manifesto-guidelines-en.pdf〉.
- [36] Jones, Barbara M. 2010. "Libraries, technology, and the culture of privacy: Global perspective." *Library Technology Report*, November(01): 8-12.
- [37] Lawnb 법령. 20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nline]. [cited 2011.3.29].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834866B3383F4FB9B96E0AB700C25CD1|0|〉.
- [38] OECD. 1980.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nline].
〈<http://www.oecd.org/internet/interneteconomy/oecdguidelinesonthe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 [39] OECD. 2002.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Paris: OECD Publishing.
- [40]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 [online].
〈<http://www.spl.org/privacy/the-seattle-public-library-website-privacy-notice>〉.
- [41] Sturges, Paul, Teng, Vincent, & Iliffe, Ursula. 2001. "User privacy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A matter of concern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Management*, 22(8-9): 364-370.
- [42] Sturges, Paul. 2002. "Remember the human: The first rule of netiquette, librarians and the internet." *Online Information Review*, 26(3): 209-216.
- [43] Swan, John C. 1983. "Public records and library privacy." *Library Journal*, 108(15): 1645-1650.
- [44] Syracuse University Library. 2012. "Syracuse University Library Privacy Policy." [online]. [cited 2012.9.18]. 〈<http://library.syr.edu/PDF/privacypolicy.pdf>〉.
- [45] Tripathi, Sneha, & Tripathi, Aditya. 2010. "Privacy in libraries: The perspective from India." *Library Review*, 59(8): 615-62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un-Hui, 2003. "Saseo mit jeongbo service jikui yunli uisik-e gwanhan yeongu." *Library with People*, 4(4): 20-59.
- [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rivacy Policy." [online].
 <http://www.nl.go.kr/nl/c6/page1_1.jsp>.
- [3] Kwon, Geon Bo, 2005. *Gaein Jeongbo Bohowa Jagi Jeongbo Tongjegwon*. Seoul: Kyeongin Munhwasa.
- [4] Kim, Gi-Mun. 2003. "Miguk-ui aegukbeobgwa doseogwan iyongjaui privacy." *Library with People*, 4(4): 60-71.
- [5] Kim, Ki-Seong. 2006. *A Study on the Privacy of University Libraries*. M.A. thesis, Chungnam University.
- [6] Kim, Hae-Kyoung, & Nam, Tae-Woo. 2004. "A new model for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of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4): 329-352.
- [7] Kim, Hye-Sun. 1994. *A Study on Ethics in Librarianship*.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8] Noh, Younghee 2012a. "A study of digital library service records and user priv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87-214.
- [9] Noh, Younghee. 2012b. "A study of personalized user services and privacy in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53-384.
- [10] Park, Sang-Keun. 2009. *A Study on the Plan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Public Libraries*. M.A. thesis, Kyonggi University.
- [11] Park, Hwon-Il. 2001. *A Study on the Data Protection Measures in Line with EU Directive*. Seoul: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Research Report 2001-11.
- [12] Byeon, Jae-Ok. 1975. "The right of privacy." *The Journal of Yeungnam University*, 8: 17-36.
- [13] Byeon, Jae-Ok. 1983. "The right to privac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Yeungnam University)*, 3(2): 5-28.
- [14] Sohn, Yeon Ok. 1996.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ibrarian and library 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485-517.
- [1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troduce privacy policy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2005. *Yonhap News*, July 1. [online]. [cited 2005.7.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

- =0001040676).
- [16] Lee, Geon-Myeoung. 200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curity of Public Libraries*. M.A. thesis, Hannam University.
- [17] Lee, Mi-Hwa. 2006. "A study on user perceptions about privacy and library records." *The Journal of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7: 225-240.
- [18] Lee, Jae-Myeong. 1984. "A study on problems of freedom and privacy of personal life." *Th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 112-132.
- [19] Joung, Hyun-Tae.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
- [20] Koean Library Association. 1997.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online].
<http://www.kla.kr/jsp/information/library_info.jsp>.
- [21] Koean Library Association. 1997.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was enacted." *KLA Journal*, 38(6): 37-39.
- [22] Koean Library Association. 2006.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712-713.
- [23]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2012. "Information Security Statistics." [online].
<<http://isis.kisa.or.kr/sub07/?pageId=070500>>.
- [24] Han, Su-Ung. 2002. "The human rights on constitution." *Heonbeob Nonchong*, 13: 623-678.
- [25]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3. *Gonggong Gigwan-ui Gaein Jeongbo Bogo Jedo Ihaewa Haeseol*.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26]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2008. *Mingan Gieob Gaein Jeongbo Boho Manual*. Seoul: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